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2015 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016 년 2 월 19 일
삼성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윤 용 암

(서명)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윤용암" (Yoon Yong-am), written over the printed name.

목 차

| | |
|---------------------------------|-----------|
| 1. 지배구조 일반 | 1 |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1 |
| 나. 지배구조 현황..... | 2 |
| 다. 관련 규정..... | 4 |
| 2. 이사회 | 5 |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5 |
| 나. 구성 | 7 |
| 다. 활동내역..... | 8 |
| 라. 평가 | 12 |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완료) | 13 |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3 |
|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 13 |
| 다. 구성 | 13 |
| 라. 활동내역..... | 13 |
|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 14 |
|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 17 |
|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18 |
| 아.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 18 |
|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19 |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19 |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19 |
|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19 |
|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 20 |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20 |
|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 20 |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 20 |
| 5. 감사위원회 | 21 |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21 |
| 나. 구성 | 22 |
| 다. 활동내역..... | 23 |

| | |
|-----------------------------------|-----------|
| 라. 감사보조조직 등..... | 25 |
| 6.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 26 |
| 나. 구성 | 27 |
| 다. 활동내역..... | 28 |
|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 29 |
|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 31 |
|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 33 |
| 7. 리스크관리위원회 | 36 |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36 |
| 나. 구성 | 37 |
| 다. 활동내역..... | 37 |
| 8. 내부거래위원회 | 39 |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39 |
| 나. 구성 | 39 |
| 다. 활동내역..... | 40 |
| 라. 평가 | 41 |
| 9. 사외이사 활동, 보수 등 | 42 |
|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42 |
|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 43 |
| 다. 사외이사 교육, 연수..... | 45 |
|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 46 |
| 마.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 46 |
| 바. 사외이사 평가..... | 46 |
|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47 |
| 아.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48 |
| 10. 주주총회 | 50 |
| 가. 주주현황..... | 50 |
|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 50 |
|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52 |
|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52 |
| 첨부 1. 삼성증권주식회사 정관 | 53 |

| | |
|---------------------------|----|
| 첨부 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 71 |
| 첨부 3. 윤리강령 | 74 |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삼성증권주식회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삼성증권주식회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법규 등에 따라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15년 12월 이전 김남수 前 사내이사 포함 사내이사 3인 및 사외이사 4인, '15년 12월 이후 사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4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한으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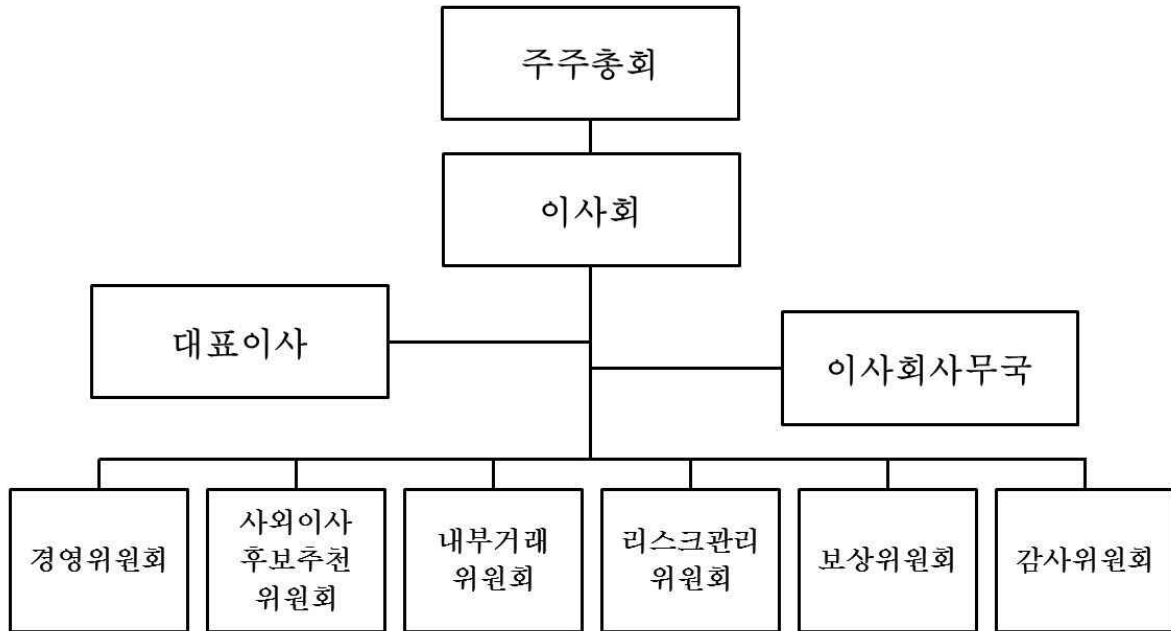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수시공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주식회사는 관련법규 등에 기반하여 지배구조 원칙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구분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경영위원회 | 2명 | 0명 |
| 감사위원회 | 1명 | 3명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명 | 2명 |
| 보상위원회 | 1명 | 2명 |
| 리스크관리위원회 | 1명 | 2명 |
| 내부거래위원회 | 0명 | 3명 |

(2) 지배구조의 특징

삼성증권주식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상법 등 관련법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회회장의 임면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주식회사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6개의 이사회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경영일반, 재산운용,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리스크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을 위해 설치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규정 제(개)정,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대책수립, 리스크 한도의 설정 및 관리, 리스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부거래 보고/청취, 심의/의결, 조사 및 명령, 보고 및 시정조치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제도의 설계, 운영, 지급결정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보상위원회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도 상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 2015년 12월 이전

| 내부기관 | 주요역할 |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 의장 (이름/상임, 사외, 비상임 여부) | 관련규정 |
|---------------|-----------------|------------------------|------------------------------|----------------------------|
| 이사회 |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 | 4/7 | 전삼현(사외) | 정관 제34조 이사회규정 |
| 경영팀 | 회사주요사항 의결 | 0/2 | 윤용암(상임) | 정관 제34조의3 경영위원회규정 |
| 사외이사 후보추천팀 | 사외이사후보 추천 | 2/3 | 윤용암(상임) | 정관 제34조의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
| 내부거래팀 | 계열사내부거래 심의 | 3/3 | 전삼현(사외) | 정관 제34조의8 내부거래위원회규정 |
| 리스크관리팀 | 리스크감독 | 2/3 | 윤용암(상임) | 정관 제34조의7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 보상팀 | 경영진성과보상 제도운영 | 2/3 | 전삼현(사외) | 정관 제34조의6 보상위원회규정 |
| 감사팀 | 내부통제 | 3/4 | 김성진(사외) | 정관 제34조의4 감사위원회규정 |

- 2015년 12월 이후

| 내부기관 | 주요역할 |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 의장 (이름/상임, 사외, 비상임 여부) | 관련규정 |
|---------------|-----------------|------------------------|------------------------------|----------------------------|
| 이사회 |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 | 4/6 | 전삼현(사외) | 정관 제34조 이사회규정 |
| 경영팀 | 회사주요사항 의결 | 0/2 | 윤용암(상임) | 정관 제34조의3 경영위원회규정 |
| 사외이사 후보추천팀 | 사외이사후보 추천 | 2/3 | 윤용암(상임) | 정관 제34조의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
| 내부거래팀 | 계열사내부거래 심의 | 3/3 | 전삼현(사외) | 정관 제34조의8 내부거래위원회규정 |
| 리스크관리팀 | 리스크감독 | 2/3 | 윤용암(상임) | 정관 제34조의7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 보상팀 | 경영진성과보상 제도운영 | 2/3 | 전삼현(사외) | 정관 제34조의6 보상위원회규정 |
| 감사팀 | 내부통제 | 3/4 | 김성진(사외) | 정관 제34조의4 감사위원회규정 |

다. 관련 규정

- 첨부1. 삼성증권주식회사 정관
- 첨부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첨부3. 윤리강령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삼성증권주식회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이사회규정 제3조)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해당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삼성증권주식회사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경영위원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규정 제2조).

(나) 정관변경

삼성증권주식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상법 제393조의2②, 이사회규정 제8조①)

(다) 예산 및 결산승인

삼성증권주식회사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예산을 승인합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삼성증권주식회사 경영위원회는 지점, 사무소 등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대해 부의 의결합니다(상법 제393조①, 경영위원회규정 제7조①).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삼성증권주식회사 이사회는 지난 1년간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장 선임,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부의 건 등을 승인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의 기준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일상감시제도를 통하여 대주주·임원과의 거래 등에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검토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임원과의 주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운영한 이후에 최종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회는 업무 집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 의결권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 집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이사회 결의 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7조③)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법령의 준수·자산운용의 건전성 유지·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제도, 내부통제체계, 행동규범,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준수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이사회 의결로서 진행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①, 내부통제기준 제10조①)

내부통제체계·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은 산하 전담조직의 운영 또는 조직별 준법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그 위반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연 1회 이상 내부통제 자율규제 평가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감사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 규정 제9조(이사회내 위원회), 제9-4조(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회내 소위원회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 및 리스크관리 관련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자) 경영승계업무

삼성증권주식회사 이사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입니다.

나. 구성

(1) 총괄

삼성증권주식회사 이사회의 총원수는 3명이상 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정관 제28조). 단 사외이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회사의 자산규모, 고도화된 증권업의 특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중요사항들을 적절하게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5년말 이사회는 총 6명으로, 대표이사, 사내이사 1명(상근감사위원 1명 포함) 및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년 3월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1명의 사외이사가 연임되고 1명의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사내이사(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포함) 및 사외이사 모두 최초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지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최대 재임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정관 제30조)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8조)

이사회회장으로는 현재 송실대 법대 교수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로 활동 중인 전삼현 사외이사가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15년 3월 의장으로 선임되어 재직중입니다.

(2) 구성원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임기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
|-----|------|--------|--------------------------|---|
| 윤용암 | 사내이사 | 대표이사 | '15.1.27 ~ '18.01.26 | 경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 송경철 | 사내이사 | 상근감사위원 | '14.03.14 ~ '17.03.13 | 감사위원회 위원 경영위원회 위원 |
| 전삼현 | 사외이사 | - | '12.06.05 ~ '16.03.12 | 보상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김성진 | 사외이사 | - | '13.06.07 ~ '16년 주총일 | 감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김경수 | 사외이사 | - | '14.03.14 ~ '17.03.13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이승우 | 사외이사 | - | '15.03.13 ~ '18.03.12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성명 | 경력 |
|-----|---|
| 윤용암 | - '99. 삼성물산 뉴욕지사 관리팀장, 이사 - '01. 삼성전자 북미총괄 전략기획 팀장, 상무 - '09. 삼성화재 기업영업총괄 겸 해외사업총괄, 부사장 - '11.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 부사장 - '12. 삼성자산운용 사장 |
| 송경철 | - '82. 증권감독원 입사 - '99. 금융감독원 감독10국 팀장 - '00.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팀장 - '02. 금융감독원 총무국 부국장 겸 인사팀장 - '05. 금융감독원 증권검사1국 국장 - '07.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국장 - '08. 금융감독원 변화추진단장 부원장보 - '08.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 부원장 |
| 전삼현 | - '92. 녹산학술장학재단 상임이사 - '93. 숭실대 법학과 교수 - '93.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 '95.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총무이사 - '03.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 '06.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
| 김성진 | - '00.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 '03.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실 비서관 - '04. 중소기업청 청장(차관급) - '06. 해양수산부 장관 - '07.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09. 한경대 총장 - '13.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
| 김경수 | - '84. 미국 Tulane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 - '88. 성균관대 경제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 '9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99. 한국금융학회 이사 - '07.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 '12. 한국금융학회 회장 |
| 이승우 | - '78. 행정고시 22회 합격 - '04.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장 - '05.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국장 - '06.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 '07.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 '09. 예금보험공사 사장 |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5년에 개최된 총 9회의 이사회 모두 재적이사의 100% 참여 하 개최되었기에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지난 한해 37건의 보고 및 의결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5년 1월 27일 이사회 (1시간)

[안건통지일 : 2015년 1월 20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유영상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송경철 | 김남수 | |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 없음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가.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가결 |
|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가결 |
| 다. 제33기 결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가결 |

(나) 2015년 2월 12일 이사회 (1시간)

[안건통지일 : 2015년 2월 5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유영상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윤용암 | 송경철 | 김남수 |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가.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신용공여 관련 규정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다) 2015년 3월 13일 이사회 (1시간)

[안건통지일 : 2015년 3월 6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윤용암 | 송경철 | 김남수 | |
| 1. 이사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윤용암 | 송경철 | 김남수 |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 없음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가.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이사회 內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內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라) 2015년 5월 11일 이사회 (1시간)

[안건통지일 : 2015년 5월 4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윤용암 | 송경철 | 김남수 | |
| 1. 이사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윤용암 | 송경철 | 김남수 |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가. '15년 상장지수증권 일괄신고서 제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회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마) 2015년 6월 26일 이사회 (1시간)

[안건통지일 : 2015년 6월 19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윤용암 | 송경철 | 김남수 | |
| 1. 이사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윤용암 | 송경철 | 김남수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 없음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가.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삼성SRA자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삼성SRA자산(신용공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삼성자산 사모펀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삼성자산 대차거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삼성자산 Wrap자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바) 2015년 8월 20일 이사회 (1시간)

[안건통지일 : 2015년 8월 13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윤용암 | 송경철 | 김남수 |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가. 주요주주와의 거래한도 증액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15년 주가연계증권 발행한도 증액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이사회 결의사항 중 위임관련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사) 2015년 10월 22일 이사회 (1시간)

[안건통지일 : 2015년 10월 15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윤용암 | 송경철 | 김남수 |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 없음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가. 자기주식 취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아) 2015년 11월 13일 이사회 (1시간)

[안건통지일 : 2015년 11월 6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윤용암 | 송경철 | 김남수 |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 없음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가. '16년 주요주주와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16년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한도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자) 2015년 12월 22일 이사회 (1시간)

[안건통지일 : 2015년 12월 15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 | 가결 여부 |
|--------------------------|----------|-----|-----|-----|-----|-----|----|----------|
| 1. 이사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윤용암 | 송경철 | | - |
| 2. 참석여부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가. 이사회 內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라. 평가

(1)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정성, 전문성 등의 활동평가와 기업과 주주 등을 위한 의사결정 노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완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동위원회 규정 제8조와 제10조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하여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내역은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및 사외이사 평가방법, 주기 등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투철한 책임의식 등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예비후보자를 추천 받아 관리할 예정이며, 연간 2회 예비후보자를 탐색하여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는 등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외이사 후보군과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다.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 ④에 의거, '15년말 기준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위원은 경영, 경제, 금융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 15.12.31일자 기준]

| 성명 | 이사구분 | 직위 | 임기 |
|-----|------|-----|-----------------------|
| 윤용암 | 사내이사 | 위원장 | '15.01.27 ~ '16.03.12 |
| 김경수 | 사외이사 | 위원 | '14.03.14 ~ '16.03.13 |
| 이승우 | 사외이사 | 위원 | '15.03.13 ~ '16.03.12 |

라.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지난 2015년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2인에 대한 후임을 위해 2015년 2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존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중 활동내역, 평가결과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인의 재선임 및 금융, 경제부문 외부 전문인력 1인을 재적위원 전원 승인 하에 추천 되었습니다.

또한 8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서는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후보군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15년 2월 12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안건통지일 : 2015년 2월 6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윤용암 | 김남수 | 유영상 | 김성진 | 김경수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 - | | | | | |
| 4. 의결(심의)안건 | | | | | | |
|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2015년 8월 20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안건통지일 : 2015년 8월 14일]

| 항목 | 이사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 윤용암 | 김경수 | 이승우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 | |
| 4. 의결(심의)안건 | | | | |
| - | - | - | - | - |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2014년 3월 14일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유임된 유영상 이사와 2012년 6월 5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전삼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2015년 2월 12일 개최되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삼현 사외이사의 기존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및 전문성, 윤리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하였으며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이승우 前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된 이후 동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5년 3월 13일 개최된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 성명 : 전삼현 이사 / 이승우 前예금보험공사 사장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 구분 | 전삼현 이사 | 이승우 前예금보험공사 사장 |
|-------------|--|--|
| ①출생연도 | 1962년 | 1952년 |
| ②출신학교 | 장훈고 승실대 법학 학사 승실대 법학 석사 프랑크푸르크대 법학 박사 | 경기고 서울대 법학 학사 |
| ③경력 | '06 ~ (現)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03 ~ (現)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93 ~ (現) 승실대 법학 교수 | '09~ '12 예금보험공사 사장 '07~ '0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06~ '07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
| ④사외이사 경력 | - 근무기간 : '12.06 ~ '15.03 - 회 사 명 : 삼성증권주식회사 - 이사회 참석횟수 : 9/9 -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수 : 13/13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전삼현 사외이사 및 이승우 前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윤용암 삼성증권 대표이사입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2년에 삼성증권주식회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전삼현 사외이사와 2015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윤용암 대표이사와는 업무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이승우 사외이사 후보자도 후보제안자인 윤용암 대표이사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전삼현 사외이사는 승실대학교 법학교수로서 경영법률학회 이사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소 법학 전반에 걸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에서 활발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였고, 향후에도 이사회 의사결정 및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연임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이승우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하여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 비서관, 경제정책 비서관 등을 역임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탁월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이사회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전삼현, 이승우 사외이사 후보자는 전문성 등을 근거로 윤용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자본시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요건의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당사는 2010년부터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에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것을 명시화하는 등 사외이사의 전문성 요건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삼현 사외이사는 숭실대학교 법학교수로서 경영법률학회 이사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소 법학 전반에 걸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에서 활발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이승우 후보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하여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 비서관, 경제정책 비서관 등을 역임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공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요건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승우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전삼현 사외이사 후보자는 2012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후보자는 금융위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윤리적 판단과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삼현 사외이사는 선임 이후 윤리적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충실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한 회사는 상법에 따라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당사를 포함 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100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당사는 '15년에 선임된 전삼현, 이승우 사외이사에 대해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에 의한 자격확인심사표,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등을 통해 본인소명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삼성증권 이사회사무국 및 사외이사는 각각 이사회가 정한 평가서를 활용하여 매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의 활동결과를 평가하며,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로 사외이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서의 항목은 주주의 이익 및 경영진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등 기본 역할과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 등의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삼현 사외이사 후보자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이 100%에 가까우며, 전반적인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15년 2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전삼현 사외이사는 '12년 6월 삼성증권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이 100%에 근접할 정도로 적극적인 참석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재임기간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전삼현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추후 기존 사외이사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전삼현, 이승우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5년 2월 12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5명 중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2015년 3월 13일 개최한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2명이며, 유명상 사외이사는 2014년 주주총회에서 1년의 임기로 연임 총 5년의 사외이사 임기를 채웠습니다. 전삼현 이사는 12년 선임하여 3년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2015년 초 실시한 사외이사평가 결과, 전삼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 사외이사명 | 재임기간 | 연임여부 | 이사회등 참석률 ^{주)} | 평가 여부 |
|-------|------------|------|------------------------|-------|
| 유명상 | '10.06.01~ | 2 | 100% | 실시 |
| 전삼현 | '12.06.05~ | - | 100% | 실시 |
| 김성진 | '13.06.07~ | - | 95% | 실시 |
| 김경수 | '14.03.14~ | - | 100% | 실시 |
| 이승우 | '15.03.13~ | - | 100% | 실시 |

주) 이사회등 참석률의 산정기간은 '15.1월 ~ '15.12월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삼성증권은 주요주주 및 임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삼성증권은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주요주주 및 임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들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삼성증권은 15년 8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 14명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연중 사외이사 지원부서에서 후보군의 자격 검증을 시행, 지속적으로 후보군을 검토하고 결격사유 및 후보군의 다양한 전문분야 확보를 위해 후보군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16년 1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총 16명의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 분야 | 후보군 수 | 백분율 | 비고 |
|-------|-------|------|----|
| 금융 | 5 | 31% | |
| 경영/경제 | 4 | 25% | |
| 재무/회계 | 2 | 13% | |
| 법률 | 3 | 19% | |
| 기타 | 2 | 13% | |
| 합계 | 16 | 100% | |

아.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 지원부서 : 이사회사무국
- 조직구성 : 부서장(총괄) 1명, 차장급 1명
- 지원내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업무 등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선임과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은 이사회가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붙임>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첨부 2 참조)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각종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는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최종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지원부서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경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상기 사유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받아 최고경영자승계규정 제5조 자격요건을 재검증하여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7조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최종후보를 확정하여야 하며, 최종 후보를 확정 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완료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비상계획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규정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며, 최고경영자가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가 개시된 경우 최고경영자내부승계규정 제8조에서 정한 승계절차를 진행하되, 이사회는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해당사항 없음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해당사항 없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승계절차운영지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총괄하여 운영합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총 16명의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당사 이사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당사 인사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군 평가 및 검증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22일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매년 1회 승계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당사는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팀을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있으며, 同부서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외에도 인력운용, 인사제도, 채용, 교육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이해상충 소지가 적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지원부서 : 인사팀
- 직원수 : 총 15명
- 담당자 : 팀장 1명, 담당간부 2명

5.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삼성증권 주식회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리스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전에 대한 감독

삼성증권 주식회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주요 안전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15년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주요 안전에 대해 심의를 거쳤고 약 70%는 사전심의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거쳤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412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402조)

이에 따라 '15. 2월에 소집된 15년도 1차 감사위원회는 제33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재무담당 집행임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외부회계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고, 안진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 4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5. 2월에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재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전문성 및 대외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대형회계법인 중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일상감사 등을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의 업무 통할
-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삼성증권 주식회사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동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외감법 시행령 제7조)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합니다.(외감법 제2조)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5년도 1~4차 감사위원회(2, 5, 8, 11월 개최)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교육실시 등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적극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상법시행령 제37조)

- 변호사, 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CIA)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금융업무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이에 삼성증권 주식회사 감사위원 4명('15.12.31 기준)은 상기 자격을 충족하였습니다.

(2) 구성원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유영상(사외) | 사외 | 위원장 | '11.06.03 | '15.03.13 |
| 김성진 | 사외 | 감사위원/위원장 | '14. 3.14 | '16. 3.13 |
| 김경수 | 사외 | 감사위원 | '14. 3.14 | '17. 3.13 |
| 이승우(신규선임) | 사외 | 감사위원 | '15. 3.13 | '18. 3.12 |
| 송경철 | 상임 | 상임감사위원 | '14. 3.14 | '17. 3.13 |

(3)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5년에는 재적이사의 100% 참여 하에 총 4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보고사항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전 감사위원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임원이 안전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총 7건의 의결 및 심의 안전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 : '15. 2.12일(08:30)

[안전 통지일 : '15. 2.10일]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유영상 | 김성진 | 김경수 | 송경철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의결안전 | | | | | |
| 가. '15년 감사계획 수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작성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다. 제33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라. 2014회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마.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바.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작성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나) 제2015년도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 : '15. 5.11일(15:00)

[안전 통지일 : '15. 5. 9일]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송경철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의결안전 | 의결안전 없음 | | | | |

(다) 제2015년도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 '15. 8.20일(15:00)

[안건 통지일 : '15. 8.18일]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송경철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 | | | |

(라) 제2015년도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 : '15.11.13일(09:00)

[안건 통지일 : '15.11.11일]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송경철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의결안건 | | | | | |
| 가. 내부통제기준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보조조직으로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실이 있으며 '15.12월 기준 감사실장 외 15명의 감사인(서무2명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자 | 대상 | 보고 및 지원내용 |
|-----------|-------|--------------------|
| '15.02.12 | 감사위원회 | '15년 감사계획 |
| | | '14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
| | | '14년 하반기 지점감사 결과 |
| | | '14년 4분기 상시감사 결과 |
| | | 내부감사 협의제도 과제 점검 결과 |
| | | Wrap생태계 프로젝트 조사 |
| | | '14년 4분기 대외기관 수검결과 |
| '15.05.11 | 감사위원회 | 스마트사업부 운영감사 |
| | | '15년 1분기 지점감사 결과 |
| | | '15년 1분기 상시감사 결과 |
| | | 내부감사 협의제도 과제 점검 결과 |
| '15.08.20 | 감사위원회 | '15년 상반기 지점감사 결과 |
| | | '15년 2분기 상시감사 결과 |
| | | '15년 전사 업무프로세스 점검 |
| | | 내부감사 협의제도 과제 점검 결과 |
| | | 고객자금 횡령 건 조사 결과 |
| | | '15년 2분기 대외기관 수검결과 |
| '15.11.13 | 감사위원회 | '15년 3분기 상시감사 결과 |
| | | '15년 하반기 준법감사 결과 |
| | | 해외채권 자체감사 결과 |
| | | 내부감사 협의제도 과제 점검 결과 |

6.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1) 총괄

당사는 보상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이사회내 소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9조의5를 그 근거로 하여 2010년 5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인 위원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삼현 사외이사 및 김성진 사외이사가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연속하여 2년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5년 5차에 걸쳐 개최된 보상위원회를 통해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당사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의 총보상 중 상당부분은 변동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동보상 중 상당부분을 이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는 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 지급, 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상 지급, 보상체계 재조정 등 모범기준 전반에 관해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는 회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모범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상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보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사내 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정』 제3조에 보상위원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의하는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인력을 대상으로 변동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보상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이연기간, 이연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5년말 기준으로 모범기준을 적용받는 경영진 및 특정직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 분류 | 인원수 | 직명 |
|-------|-----|----------------|
| 경영진 등 | 27명 |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
| 특정직원 | 66명 | 운용 및 IB부문 인력 |

(마)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회사내 모든 사업부에 적용
- ② 해외: 해외영업점(자회사, 지점)에 적용

(바) 기타

나. 구성

(1) 총괄

당사 보상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고 있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3인(전삼현, 김성진, 운용암)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인(전삼현, 김성진)의 위원이 사외이사로,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운용암 이사는 재무관련 분야 전문가로 당사에서 대표이사 및 위원관리위원회 위원이며, 전삼현 이사는 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보상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現 운용암 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2015년 12월 이전까지는 김남수 이사(前 삼성증권 CFO)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2015년 12월 이전

| 성명 | 직명 |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 회사의 재무분야 경험 유무 | 약력 |
|-----|----|----------------------------|-------------------|-------------|
| 전삼현 | 이사 | 사외 : ○, 위험관리 : ○ | × | 現 송실대 법대 교수 |
| 김성진 | 이사 | 사외 : ○, 위험관리 : × | ○ | 現 서울대 초빙교수 |
| 김남수 | 이사 | 사외 : ×, 위험관리 : × | ○ | 前 삼성증권 CFO |

- 2015년 12월 이후

| 성명 | 직명 |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 회사의 재무분야 경험 유무 | 약력 |
|-----|----|----------------------------|-------------------|-------------|
| 전삼현 | 이사 | 사외 : ○, 위험관리 : ○ | × | 現 송실대 법대 교수 |
| 김성진 | 이사 | 사외 : ○, 위험관리 : × | ○ | 現 서울대 초빙교수 |
| 운용암 | 이사 | 사외 : ×, 위험관리 : ○ | ○ | 現 삼성증권 대표이사 |

(2) 구성원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전삼현 | 사외 | 위원 | '15.03.13 | '16.03.12 |
| 김성진 | 사외 | 위원 | '15.03.13 | '16.03.12 |
| 윤용암 | 상임 | 위원 | '15.12.22 | '16.03.11 |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5년에는 총 5회의 보상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6월에 소집된 보상위원회를 제외하면 100%입니다. 1월에 소집된 '15년도 1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의 건을 승인하였고, 2월에 소집된 '15년도 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14년 성과급 이연대상자 선정의 건, 3월에 소집된 '15년도 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14년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6월에 소집된 '15년도 4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2차년분 지급의 건과 계약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12월에 소집된 '15년도 5차 보상위원회에서는 '15년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보상위원회 : 2015.1.5일 오후 14:30

[안건 통지일 : 2015.1.2일]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유영상 | 전삼현 | 김남수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14년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나) 제2015년도 제2차 보상위원회 : 2015.2.25일 오후 14:30

[안건 통지일 : 2015.2.22일]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유영상 | 전삼현 | 김남수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14년 성과급 이연대상자 선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다) 제2015년도 제3차 보상위원회 : 2015.3.13일 오전 12:00

[안건 통지일 : 2015.3.6일]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남수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14년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라) 제2015년도 제4차 보상위원회 : 2015.6.3일 오후 16:00

[안건 통지일 : 2015.5.27일]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남수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불참(해외출장)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장기성과 인센티브 2차년분 지급의 건 | 찬성 | - | 찬성 | 가결 |
| 나. 계약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찬성 | - | 찬성 | 가결 |

(마) 제2015년도 제5차 보상위원회 : 2015.12.22일 오전 08:00

[안건 통지일 : 2015.12.15일]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남수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15년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1) 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당사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24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3)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현재 보상위원회는 필요시 외부자문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2015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15년의 경우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당사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CEO 산하 직속 부서인 리스크관리팀으로 2015년 12월말 기준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말 신규 전입인력을 제외하면 부서 평균 근속년수는 4.3년이며 FRM(5명), CFA(2명), CPA(1명) 등 전문자격 보유자 및 재무, 리스크 등 풍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준법감시 부서는 준법감시인 산하의 준법감시팀과 법무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말 기준 총 15명으로 준법감시팀 11명과 법무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균 근속년수는 4.5년이며 변호사(3명), 회계사(1명) 등 전문자격 보유자 및 감사, IT 등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분류 | 인원수 | 비고 |
|--------|-----|----|
| 리스크관리팀 | 17 | |
| 준법감시팀 | 11 | |
| 법무팀 | 4 | |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전사 리스크관리 조직인 리스크관리팀 및 준법감시팀 직원들의 경우 인별 업무성과 목표가 회사의 계량적인 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고유직무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경영진 및 특정직원의 경우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의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성과급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특정직원 외에 일반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 손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諸수당을 월급여 항목으로 통합 및 단순화하여 임금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① 보상체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성과지표 설정 원칙

당사는 리스크와 연계한 장기성과 평가를 위해 수익성, 건전성 및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주당이익, 세전이익률, 금감원 민원평가 등급 등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주요 측정지표

1. 수익성 지표 : 주당이익(EPS, Earnings Per Share), 세전이익률 등
2. 건전성 지표 : 영업용순자본 비율
3. 고객 만족도 : 금감원 민원평가 등급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

③ 동 측정결과와 보상의 연계방법

상기 주당이익, 세전 이익률,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주가수익률 등은 경영진의 경영 성과지표로 직접 반영되고 있습니다.

④ 동 측정지표와 회사 전체 리스크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당사의 성과보상체계에 반영된 영업용순자본비율, 금감원 민원평가 등급은 당사의 리스크관리의 핵심지표입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통하여 회사 자본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감원 민원평가 등급은 회사의 고객관리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경영진의 경우, 이상의 리스크관리의 핵심 지표들이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성과평가의 결과가 보상체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 영업용순자본비율은 300%를 하회하는 경우 변동보상액 지급률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① 회사 전체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주당이익, 세전이익률, 주가수익률), 건전성 지표(영업용순자본비율) 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금감원 민원평가등급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 재무성과(세전이익, M/S등)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직원의 경우 인당매출 및 개인별 업무 목표 등을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주당이익, 세전이익률, 주가수익률,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의 재무지표를 활용하며 성과보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직원의 경우 소속부서의 세전이익, 손익목표 달성도 등에 따른 지급률 기준으로 성과보상 재원을 산출하고, 개인 성과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에 대한 성과보상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④ 성과미달시 보상을 조정하는 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성과 달성률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 부여수량이 조정됩니다.
특정직원의 경우 성과미달시 변동보상액이 축소됩니다. 손실발생시 전년도에서 이연된 변동보상에서 차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 ①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은 3년간 이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 ② 장기성적을 반영하기 위한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정책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의 경우, 변동보상액을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③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변동보상액 결정시 이연보상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①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상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고,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변동 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② 변동보상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식연계상품 보상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③ 변동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보상중 상당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1차년도는 현금, 2차년도 및 3차년도는 주식연계상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 ④ 특정직원의 경우 변동보상액에 따라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비율을 결정하고, 이연지급액은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3년동안 이연하고 있습니다.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1)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 구분 | 수급자수 ^{주1)} | 고정보상액 ^{주2)} | 변동보상액 ^{주3)} | | |
|-------------|---------------------|----------------------|----------------------|---------|------|
| | | | 이연지급 대상 | 이연지급 대상 | |
| 전년도(2014년) | 경영진 | 27 | 77.7 | 46.2 | 23.1 |
| | 특정직원 | 1 | 1.5 | 0.7 | 0.2 |
| 당해년도(2015년) | 경영진 | 25 | 79.6 | 6.2 | 2.1 |
| | 특정직원 | 33 | 36.7 | 35.5 | 15.8 |

-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경영진·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 주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고정보상'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변동보상'으로 분류
- 주3) 집단성과급(PS等)은 변동보상액에서 제외

(2) 변동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 변동보상액 | | | | |
|-------------|------|-------|-------------------|-----------------------|-------------------|---|
| | | 현금 | 주식 ^{주1)} | 주식연계상품 ^{주2)} | 기타 ^{주3)} | |
| 전년도(2014년) | 경영진 | 48.1 | 23.1 | 0 | 25.0 | 0 |
| | 특정직원 | 0.7 | 0.7 | - | - | - |
| 당해년도(2015년) | 경영진 | 5.9 | 4.1 | - | 1.8 | - |
| | 특정직원 | 35.5 | 35.5 | - | - | - |

-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 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 이연보상액 ^{주1)} | | |
|-------------|------|----------------------|-------|------|
| | | 지급확정 ^{주2)} | 지급미확정 | |
| 전년도(2014년) | 경영진 | 26.7 | - | 26.7 |
| | 특정직원 | 0.2 | - | 0.2 |
| 당해년도(2015년) | 경영진 | 8.6 | - | 8.6 |
| | 특정직원 | 15.8 | - | 15.8 |

- 주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한다.
-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 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 구분 | | 이연보상액 | | | | | |
|-------------|------|-------|------|------|------|----|---|
| | | t기 | t-1기 | t-2기 | t-3기 | 이전 | |
| 전년도(2014년) | 경영진 | 26.7 | 25.0 | 0.7 | 1.0 | - | - |
| | 특정직원 | 0.2 | 0.2 | - | - | - | - |
| 당해년도(2015년) | 경영진 | 8.6 | 0.7 | 7.7 | 0.2 | - | - |
| | 특정직원 | 15.8 | 15.8 | 0 |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5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2015년(t기) 발생분, 2014년(t-1기) 발생분, 2013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주) 지급액을 차감한 잔고 기준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 이연보상액 | | | |
|-------------|------|--------------------|---------|-----------|---------|
| | | 축소액 ^{주1)} | 추가변동 반영 | 성과평가 등 반영 | 기타 환수금액 |
| 전년도(2014년) | 경영진 | △0.3 | △0.3 | - | - |
| | 특정직원 | △0.0 | △0.0 | - | - |
| 당해년도(2015년) | 경영진 | +2.5 | +2.5 | - | - |
| | 특정직원 | - | - |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추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추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한다.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 구분 | | 수급자수 | 보장성 상여금 |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2014년) | 경영진 | - | - | - |
| | 특정직원 | - | - | - |
| 당해년도(2015년) | 경영진 | - | - | - |
| | 특정직원 | - | - | - |

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성의 보장상여는 보장성 상여금에서 제외 (이하 동일)

주) 기존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 구분 | | 수급자수 | 보장성 상여금 |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2014년) | 경영진 | - | - | - |
| | 특정직원 | - | - | - |
| 당해년도(2015년) | 경영진 | - | - | - |
| | 특정직원 | - | - | - |

주) 신규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중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8)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단위 : 명, 억원)

| 구분 | | 수급자수 | 퇴직보상액 ^{주)} |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
| 전년도(2014년) | 경영진 | - | - | - |
| | 특정직원 | - | - | - |
| 당해년도(2015년) | 경영진 | - | - | - |
| | 특정직원 | - | -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9)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 구분 | 임직원 보수총액(A) ^{주1)} |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주2)} | | 임직원수(C) | 임직원 평균보수(A/C) |
|-------------|----------------------------|-----------------------------|---------|---------|---------------|
| | | | 비율(A/B) | | |
| 전년도(2014년) | 1,808 | 88 | 20.5 | 2,255 | 0.80 |
| 당해년도(2015년) | 작성중 (2016년 3월 15일 공시예정) | | | | |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는 t-1기인 FY2013('13.4월 ~ 12월)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임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위험관리 업무의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문화를 회사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회사의 리스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매매업에 대한 회사의 리스크 전략을 수립하여 리스크에 기반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최대손실액, VaR 등의 위험액 한도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감내 가능한 최대 위험량 및 손실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매분기 회사의 보유 포지션 및 위험액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전사 한도 부여를 의결하고 리스크 한도를 결정하는 등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여유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11월 경영계획 대비 리스크를 감안한 최대손실한도, VaR한도 등 '16년 전사한도 부여(案)을 수립·의결 하였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총괄하는 리스크관리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규정은 산하에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을 두어 금융변화 및 제도변경 등에 맞춰 적절하게 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매분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회사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리스크관리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회계,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 있는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윤용암 이사가 대표이사로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5년 3월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김남수 사내이사에서 김경수 사외이사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교체 선임하였습니다.

(2) 구성원

[2015년 12월말 기준]

| 성 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윤용암 | 상임 | 위원장 | '15.01.27 | '18.01.26 |
| 전삼현 | 사외 | 위원 | '15.03.13 | '16.03.12 |
| 김경수 | 사외 | 위원 | '15.03.13 | '17.03.12 |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5년 총 4회 소집되었으며 위원 전원 100% 참석하였습니다. 4차례 위원회를 통해 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의결사항은 3건, 보고사항은 8건이었습니다. 특히 의결사항은 리스크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2.12 (09:30)

[안건 통지일 : 2015.2.10]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윤용암 | 전삼현 | 김남수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주1)} 에 대한 의견 | 없음 | 없음 | 없음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의 件 ^{주2)}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주1) '14.11월~15.1월 개최된 RM집행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및 전사 보유자산 규모 및 위험액 현황을 보고하여 관련 內規를 준수하여 適正하게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

주2) 담보대출, 신용융자 관련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의결사항 명시 및 외화투자 부의기준 신설

(나) 제2015년도 제2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5.11 (16:00)

[안건 통지일 : 2015.5.7]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윤용암 | 전삼현 | 김경수 | |
| 1. 위원 성명 | 윤용암 | 전삼현 | 김경수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주1)} 에 대한 의견 | 없음 | 없음 | 없음 | - |
| 4. 의결안건 : 無 | | | | |

주1) '15.2月~15.4月 개최된 RM집행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및 전사 보유자산 규모 및 위험액 현황을 보고하여 관련 內規를 준수하여 適正하게 운영中인 것으로 확인

(다) 제2015년도 제3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8.20 (16:30)

[안건 통지일 : 2015.8.18]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윤용암 | 전삼현 | 김경수 | |
| 1. 위원 성명 | 윤용암 | 전삼현 | 김경수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주1)} 에 대한 의견 | 없음 | 없음 | 없음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의 件 ^{주2)}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주1) '15.5月~15.7月 개최된 RM집행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및 전사 보유자산 규모 및 위험액 현황을 보고하여 관련 內規를 준수하여 適正하게 운영中인 것으로 확인

주2)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승인권한을 하위위원회로 재위임하도록 명시 및 위험상품 승인 시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위원에 리서치센터장 추가하도록 규정 개정

(라) 제2015년도 제4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11.13 (10:00)

[안건 통지일 : 2015.11.11]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 윤용암 | 전삼현 | 김경수 | |
| 1. 위원 성명 | 윤용암 | 전삼현 | 김경수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주1)} 에 대한 의견 | 없음 | 없음 | 없음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16年 전사한도 승인의 件 ^{주2)}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주1) '15.8月~15.10月 개최된 RM집행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및 전사 보유자산 규모 및 위험액 현황을 보고하여 관련 內規를 준수하여 適正하게 운영中인 것으로 확인

주2) '16年 경영계획上 이익목표 및 외형 증가를 감안하여 위험한도를 확대하고, 여유자기자본 증가분과 차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금한도를 증액함

8. 내부거래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등과의 중요한 내부거래를 사전 심의·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심의 대상 건은 '내부거래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독립성이 검증된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내부거래 보고·청취, 심의 또는 의결, 조사 및 명령, 보고 및 시정 조치 건의 등의 권한 및 역할을 가집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내부거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 중 5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사전 심의 및 의결합니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50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 및 의결합니다.

③ 다만,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및 사규에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래는 위원회 보고대상 거래에서 제외합니다.

(나) 내부거래 조사 명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 내부거래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 건의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행위의 중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내부거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였습니다.

2015년 중 재임하였던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구성원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
| 유영상 | 사외 | 위원장 | '12.02.28 | '15.03.13 |
| 전삼현 | 사외 | 위원/위원장 ('15.3.13) | '15.03.13 | '16.03.12 |
| 김성진 | 사외 | 위원 | '13.11.14 | '16년 주총일 |
| 김경수 | 사외 | 위원 | '15.03.13 | '17.03.12 |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5년에는 총 4회의 내부거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로 충실한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함으로써 회사경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 2015.03.13 11:30~

[안건 통지일 : 2015.03.11]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제일기획과의 광고 계약의 件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주1) 삼성 브랜드 이미지 광고계약

(나) 제2015년도 제2차 내부거래위원회 : 2015.05.11 15:30~

[안건 통지일 : 2015.05.07]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제일기획과의 광고 계약의 件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주1) 당사 금융상품 등 마케팅 광고계약

(다) 제2015년도 제3차 내부거래위원회 : 2015.6.26 06:30~

[안건 통지일 : 2015.6.24]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 ^{주1)} 에 대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삼성SRA자산운용과의 거래 승인의 件 ^{주2)}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삼성자산운용과의 거래 승인의 件 ^{주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주1)'15년 삼성SDS와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계약 금액 확정 보고

주2)삼성SRA 글로벌코어오피스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매입

주3)삼성글로벌 PE Manager Fund 투자

(라) 제2015년도 제4차 내부거래위원회 : 2015.12.22 06:30~

[안건 통지일 : 2015.12.18]

| 항목 | 위원별 활동내역 | | |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 - |
| 4. 의결안건 | | | | |
| 가. 삼성SDS와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事前 승인의 件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나.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임차거래의 件 ^{주2)}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주1)삼성SDS와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계약

주2)삼성본관빌딩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연장 계약

라. 평가

삼성증권 내부거래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적 식견과 독립성을 지닌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계열사 거래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와의 주요거래 발생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적시성을 높이고 있으며, 부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임원이 설명하는 등 절차를 통해 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의사록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이사들에게 확인을 받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회의 간사를 두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 사외이사 활동, 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전삼현

| 심사항목 | 충족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자격요건 | | |
|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2. 적극적 자격요건 | | |
| 가. 전문성 | 충족 | 법률전문가 |
| 나. 직무공정성 | 충족 | 이해상충관계 無 |
| 다. 윤리책임성 | 충족 | 윤리적 문제소지 無 |
| 라. 충실성 | 충족 | 참석률 높음 |

(2) 사외이사 김성진

| 심사항목 | 충족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자격요건 | | |
|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2. 적극적 자격요건 | | |
| 가. 전문성 | 충족 | 경제전문가 |
| 나. 직무공정성 | 충족 | 이해상충관계 無 |
| 다. 윤리책임성 | 충족 | 윤리적 문제소지 無 |
| 라. 충실성 | 충족 | 참석률 높음 |

(3) 사외이사 김경수

| 심사항목 | 충족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자격요건 | | |
|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2. 적극적 자격요건 | | |
| 가. 전문성 | 충족 | 금융전문가 |
| 나. 직무공정성 | 충족 | 이해상충관계 無 |
| 다. 윤리책임성 | 충족 | 윤리적 문제소지 無 |
| 라. 충실성 | 충족 | 참석률 높음 |

(4) 사외이사 이승우

| 심사항목 | 충족여부 | 충족 이유 |
|-----------------------|------|---------|
| 1. 소극적 자격요건 | | |
|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상 임원의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 | | |
|----------------------------------|--|----|------------|
| 소극적 자격요건 | | | |
| 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 2. 적극적 자격요건 | | | |
| 가. 전문성 | | 충족 | 금융전문가 |
| 나. 직무공정성 | | 충족 | 이해상충관계 無 |
| 다. 윤리책임성 | | 충족 | 윤리적 문제소지 無 |
| 라. 충실성 | | 충족 | 참석률 높음 |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1) 사외이사 전삼현

(가) 활동내역

전삼현 사외이사는 '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 보상위원회 5회 중 5회, 내부거래위원회 4회 중 4회, 리스크관리위원회 4회 중 4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 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78,000,000 | |
| 월급여 | 78,000,000 | 6,500,000 × 12 |
| 상여금 | - | - |
| 기타 수당 | - | -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
| 업무활동비 | - | - |
| 건강검진 지원 | 1회 | - |
| 차량제공 | - | - |
| 사무실제공 |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

(2) 사외이사 김성진

(가) 활동내역

김성진 사외이사는 '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 감사위원회 4회 중 4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보상위원회 3회 중 2회, 내부거래위원회 4회 중 4회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 항목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78,000,000 | |

| | | | |
|----------------|---------|------------|----------------|
| | 월급여 | 78,000,000 | 6,500,000 × 12 |
| | 상여금 | - | - |
| | 기타 수당 | - | -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 |
| | 업무활동비 | - | - |
| | 건강검진 지원 | 1회 | - |
| | 차량제공 | - | - |
| | 사무실제공 | -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

(3) 사외이사 김경수

(가) 활동내역

김경수 사외이사는 '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 감사위원회 4회 중 4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회 중 2회, 내부거래위원회 4회 중 4회, 리스크관리위원회 3회 중 3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 항목 |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 | |
| | 월급여 | 78,000,000 | 6,500,000 × 12 |
| | 상여금 | - | - |
| | 기타 수당 | - | -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 |
| | 업무활동비 | - | - |
| | 건강검진 지원 | 1회 | - |
| | 차량제공 | - | - |
| | 사무실제공 | - | - |
| | 기타 편익제공 | - | - |

(4) 사외이사 이승우

(가) 활동내역

이승우 사외이사는 '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7회 중 7회, 감사위원회 3회 중 3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 항목 | | 금액 |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 | | |
| 김경수 | 월급여 | 65,000,000 | 6,500,000 × 10 |
| | 상여금 | - | - |
| | 기타 수당 | - | -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 |

| | | | |
|--|---------|----|---|
| | 업무활동비 | - | - |
| | 건강검진 지원 | 1회 | - |
| | 차량제공 | - | - |
| | 사무실제공 | - | - |
| | 기타 편의제공 | - | - |

(5) 요약

| 구분 | 이사회 | | 이사회내위원회 | | | | | | | | | | 활동시간 (참석률) | |
|-----|-----|----|-----------|----|-----------------|----|--------------|----|-----------|----|---------|----|---------------|------|
| | | | 감사 위원회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리스크 관리위원회 | | 보상 위원회 | | 내부거래위원회 | | | |
|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목표 | 실적 |
| 유영상 | 2 | 2 | 1 | 1 | 1 | 1 | - | - | 2 | 2 | - | - | 100% | 100% |
| 전삼현 | 9 | 9 | - | - | - | - | 4 | 4 | 5 | 5 | 4 | 4 | 100% | 100% |
| 김성진 | 9 | 9 | 4 | 4 | 1 | 1 | - | - | 3 | 2 | 4 | 4 | 100% | 95% |
| 김경수 | 9 | 9 | 4 | 4 | 2 | 2 | 3 | 3 | - | - | 4 | 4 | 100% | 100% |
| 이승우 | 7 | 7 | 3 | 3 | 1 | 1 | - | - | - | - | - | - | 100% | 100% |

* 개최·참여란에는 횟수를 기재하고, 활동시간에는 간담회 실적 등을 포함
 * 유영상 前이사 임기만료로 퇴임 및 이승우 이사 신규 선임('15.3.13日字)
)

다. 사외이사 교육, 연수

| 사외이사 성명 | 유영상 | 전삼현 | 김성진 | 김경수 | 이승우 |
|--------------------|---|-----|-----|-----|-----|
| 가. 교육·연수 실시 내역 | 0 | 1 | 1 | 1 | 1 |
| 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input type="checkbox"/> 일시 : 2015년 5월 11일 실시 <input type="checkbox"/> 내용 : 일감 몰아주기 교육 | |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나. 누적 교육 시간 | | 5 | 3 | 2 | 1 |

* '교육연수 실시 내역'은 FY2015년도를 기준으로 함.
 * '누적 교육 시간'은 사외이사로 취임 후 참석한 교육·연수 시간을 합산함.
 * 유영상 前이사 임기만료로 퇴임('15.3.13日字)

- 신임 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자료 제공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 사외이사 |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 | 기부한 금융투자 회사 등 | 지원 내역 | |
|------|-------------|--------------|---------------------|-------|-----------------------|
| | 법인등의 명 칭 | 사외이사와 관 계 | | 보고내용 | 과거 5년간 |
| 김경수 | 성균관대학교 | 교 수 | 삼성증권 | - | '11년 10억 '15년 0.1억 |

마.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 가입사 : 삼성화재
- 보험료 : 4.9억원
- 보험금 : 연간 500억원
- 계약조건 : 계약기간('15年)간 회사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함

바. 사외이사 평가

삼성증권주식회사는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초 3년으로 하고, 임기 중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1년간의 임기로 연임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전문성, 이해도 및 독립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 결산기 종료 후 이사회, 사외이사 본인, 이사회사무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로, 사외이사 본인과 이사회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정한 평가서로 사외이사를 평가합니다.

평가서의 평가항목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및 주주와 경영진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여부 등의 기본역할과 증권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여부 등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③ 평가 절차

- 매 결산기 종료 후, 이사회사무국에서는 사외이사들에게 평가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평가서 항목에 의한 평가를 요청하며, 이사회사무국 역시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등을 토대로 동일한 항목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사회는 지난 회계연도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로 평가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15년도 삼성증권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사외이사 본인, 이사회사무국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와 경영진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증권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외이사들 모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전문성 향상 노력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 사외이사 | 평가결과 | | | | | | 개선방안 |
|------|------|------|-----|-----|-----|------|------|
| | 기본역할 | 활동평가 | | | | | |
| | | 전문성 | 이해도 | 공정성 | 독립성 | 참석률 | |
| 전삼현 | 10 | 10 | 9 | 10 | 10 | 100% | - |
| 김성진 | 10 | 9 | 10 | 10 | 10 | 95% | - |
| 김경수 | 10 | 10 | 9 | 10 | 10 | 100% | - |
| 이승우 | 10 | 10 | 9 | 10 | 10 | 100% | - |

(3) 외부평가

외부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삼성증권은 이사회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이사회사무국
- 조직구성 : 부서장(총괄) 1명, 차장급 1명
- 지원내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업무 등

아.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성명 | 최초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재임 기간 | 담당위원회 | 직위 | 경력 |
|-----|-----------|-----------|----------|--|-------------------------|---|
| 오종남 | '09.06.04 | '14.03.14 | 5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위원장 위원 위원 | - '94. 재정경제원 법무담당관, 국제경제과장 - '02. 제7대 통계청장 - '04. UN통계위원회 부의장 - '04. IMF 상임이사 - '06.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교수 - '06.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07. 서울대 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주임교수 |
| 안세영 | '11.06.03 | '13.10.23 | 2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 위원 | - '91. 유엔산업개발기구 투자협력관 - '95.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통상무역비서실 - '97.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 - '98.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과장 - '99. 산업자원부 국장(이사관) - '00.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 유영상 | '10.06.01 | '15.03.13 | 5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장 | - '73. 상공부 - '02. 한국표준협회 회장 - '06. 한국자동차부품연구 원 원장 - '08. 한국부품소재통합연 구단 단장 - '09.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초빙교수 |
| 전삼현 | '12.06.05 | '16.03.12 | 4 |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장 위원 위원장 | - '92. 녹산학술장학재단 상임이사 - '93. 송실대 법학과 교수 - '93. |

| | | | | | | |
|-----|-----------|-------------|---|---|----------------------|---|
| | | | | |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 '95.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총무이사 - '03.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 '06.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
| 김성진 | '13.06.07 | '16년 주총일 | 3 |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장 위원 위원 | - '00.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 '03.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실 비서관 - '04. 중소기업청 청장(차관급) - '06. 해양수산부 장관 - '07.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09. 한경대 총장 - '13.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
| 김경수 | '14.03.14 | '17.03.13 | 2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 '84. 미국 Tulane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 - '88. 성균관대 경제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 '9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99. 한국금융학회 이사 - '07.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 '12. 한국금융학회 회장 |
| 이승우 | '15.03.13 | '18.03.12 | 1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위원 위원 | - '06.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 '07.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09. 예금보험공사 사장 |

- * 현직 사외이사는 현재 담당위원회를 기준으로 작성
- * 퇴임 사외이사는 최종 담당위원회를 기준으로 작성
- * 재임기간 산정은 연임기간 포함

10. 주주총회

가. 주주현황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76,435,165주
- 자기주식현황 : 보통주 6,329,040주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보통주 보유현황

| 구분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의결권제한법규 |
|-----------|------------|-----------|--------|---------------------------|
| 최대주주 | 삼성생명 | 8,513,524 | 11.13% | 상법 제542조의12 공정거래법 제11조 |
| | 삼성생명(특별계정) | 28,587 | 0.04% | |
| 특수 관계인 | 삼성화재 | 6,132,246 | 8.02% | |
| | 삼성문화재단 | 195,992 | 0.25% | |
| | 전삼현 | 200 | 0.00% | |

-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 3% 제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각 주주별 지분 3% 제한
 임원선임, 정관변경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 15% 제한
- 주주명부 기준 1% 이상 주주현황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우리은행(국민연금고유) | 3,969,385 | 5.19% | |
| 우리은행(한국투신) | 3,493,646 | 4.57% | |
| THE GOVERNMENT OF SINGAPORE | 1,209,674 | 1.58% | |
|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 774,916 | 1.01% | |

- 주주명부 기준 외국인주주 지분율 합계 : 19.59 %
- 연도 중 주주현황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 구분 | 2013 | 2014 | 2015 |
|-------|---------------|------------|-----------|
| 소집결의일 | 2013.05.10 | 2014.02.18 | 2015.2.26 |
| 소집공고일 | 2013.05.10 | 2014.02.18 | 2015.2.26 |
| 개최일자 | 2013.06.07 | 2014.03.14 | 2015.3.13 |
| 개최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 |
| 이사참석 | 9 | 7 | 7 |
| 소요시간 | 1 | 1 | 1 |

- 2013년

| 안건구분 | 결의 유형 | 의결정족수 | 찬성 비율 | 반대 비율 | 의결권 행사방법 |
|--------------------|----------|------------|----------|----------|-------------|
| 1. 재무제표 승인 | 보통 | 19,808,397 | 91.8% | 8.2% | |
| 2. 정관 일부변경 | 특별 | 26,411,196 | 100.0% | 0.0% | |
| 3-1. 사외이사 선임 | 보통 | 19,808,397 | 100.0% | 0.0% | |
| 3-2. 사내이사 선임 | | 19,808,397 | 100.0% | 0.0% | |
| 3-3. 사외이사 선임 | | 19,808,397 | 100.0% | 0.0% | |
| 4-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보통 | 10,949,504 | 100.0% | 0.0% | |
| 4-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 10,949,504 | 100.0% | 0.0% | |
| 4-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 10,949,504 | 100.0% | 0.0% | |
| 5. 이사보수한도 승인 | 보통 | 19,808,397 | 99.9% | 0.1% | |

- 2014년

| 안건구분 | 결의 유형 | 의결정족수 | 찬성 비율 | 반대 비율 | 의결권 행사방법 |
|--------------------|-------|------------|--------|-------|----------|
| 1. 재무제표 승인 | 보통 | 20,502,354 | 99.6% | 0.4% | |
| 2-1. 사외이사 선임 | 보통 | 20,001,169 | 100.0% | 0.0% | |
| 2-2. 사내이사 선임 | | 20,001,169 | 100.0% | 0.0% | |
| 2-3. 사내이사 선임 | | 20,001,169 | 99.9% | 0.1% | |
| 2-4. 사내이사 선임 | | 20,001,169 | 97.2% | 2.8% | |
| 3-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보통 | 12,233,627 | 100.0% | 0.0% | |
| 3-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 12,233,627 | 100.0% | 0.0% | |
| 3-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 12,233,627 | 100.0% | 0.0% | |
| 3-4.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 18,080,662 | 96.2% | 3.8% | |
| 4. 이사보수한도 승인 | 보통 | 19,837,384 | 99.8% | 0.2% | |

- 2015년

| 안건구분 | 결의 유형 | 의결정족수 | 찬성 비율 | 반대 비율 | 의결권 행사방법 |
|--------------------|-------|------------|--------|-------|----------|
| 1. 재무제표 승인 | 보통 | 18,224,532 | 99.4% | 0.6% | |
| 2-1. 사외이사 선임 | 보통 | 18,224,532 | 100.0% | 0.0% | |
| 2-2. 사외이사 선임 | | 18,224,532 | 100.0% | 0.0% | |
| 3-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보통 | 11,224,532 | 100.0% | 0.0% | |
| 4. 이사보수한도 승인 | 보통 | 18,224,532 | 99.7% | 0.3% | |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지배구조와 관련된 대외기관 평가 결과

· 2014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부문 A등급 획득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당사가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014년 8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급별 명칭 및 의미>

| 등급 | 의미 |
|----|---|
| S |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음 |
| A+ |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음 |
| A |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
| B+ |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
| B |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
| C |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큼 |
| D |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지배구조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됨 |

첨부 1. 삼성증권주식회사 정관

정 관

| | |
|-----------------|-----------------|
| 개정 : 2000.05.27 | 제정 : 1982.10.19 |
| 개정 : 2001.06.02 | 개정 : 1984.02.24 |
| 개정 : 2002.06.01 | 개정 : 1984.09.01 |
| 개정 : 2003.06.05 | 개정 : 1986.09.01 |
| 개정 : 2004.05.25 | 개정 : 1987.12.26 |
| 개정 : 2005.06.03 | 개정 : 1989.08.25 |
| 개정 : 2006.06.02 | 개정 : 1991.02.12 |
| 개정 : 2009.06.04 | 개정 : 1992.05.22 |
| 개정 : 2010.06.01 | 개정 : 1992.11.25 |
| 개정 : 2011.06.03 | 개정 : 1994.05.28 |
| 개정 : 2012.06.05 | 개정 : 1995.05.27 |
| 개정 : 2013.06.07 | 개정 : 1996.05.25 |
| | 개정 : 1997.05.31 |
| | 개정 : 1997.12.09 |
| | 개정 : 1998.05.30 |
| | 개정 : 1999.05.29 |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삼성증권주식회사(이하 “이 회사” 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SAMSUNG SECURITIES CO., LTD.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무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 다. 집합투자업
 - 라. 신탁업
 - 마. 투자자문업
 - 바. 투자일임업
2.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3.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
- ② 이 회사는 전항의 사업 외에 자본시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또는 신고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사무소, 출장소 및 해외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에 게재하며, “중앙일보”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보통주식과 기명식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육천만주 이내로 한다. 그리고 발행할 우선주식의 종류와 수는 발행 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하되, 우선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무기한부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발행된 우선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9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 등의 자본 참여에 의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결정 및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한 경우
6.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국내금융기관 등의 자본 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이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일반공모증자】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2조 제3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4 【주식의 이익소각】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상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및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 또는 해임 권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개월 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의 2주 전에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14조의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육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해외전환사채 발행이나 전략적채취 등의 필요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42조 제3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나 전략적채취 등의 필요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42조 제3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사채 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6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 1

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위원회

제28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며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29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임기를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1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사장과 기명순의 상급자 직무를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일 직급 이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순서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유고시에는 이사회

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24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는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리스크관리위원회

6. 내부거래위원회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3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는 결의로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경영위원회는 이사회는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의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제34조의4 【감사위원회】 ① 이사회는 결의로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의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결의로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의6 【보상위원회】 ① 이사회는 결의로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의7 【리스크관리위원회】 ① 이사회는 결의로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의8 【내부거래위원회】 ① 이사회는 결의로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 【이사회 결의 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하여 있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월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는 제1항의 정함을 위하여 임원보수규정 또는 임원퇴직금지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38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

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 ②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이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동일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2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보 칙

제43조 【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 총회 결의 또는 상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에 관하여는 이 정관 개정에 불구하고 상법 규칙 제14조, 제15조 및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재무부장관의 업종전환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 제1조에 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5월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제10조의2, 제11조4항, 제12조1항, 제14조5항, 제15조5항, 제27조, 제28조, 제30조2항, 제31조2항, 제34조2, 제37조, 제38조4항, 제38조5항, 제39조, 제44조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정관 개정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31조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4호의 목적사업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임·직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 제38조, 제4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단, 2013년의 경우 사업년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정 : 2015.2.1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성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하 '최고경영자' 라 한다)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대표이사 부재시 경영공백을 해소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 단순한 용어변경 등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 3 장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등

제5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 ① 최고경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 ①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각종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는 등 후보군 관리업무는 이사회 소관 업무로 한다.
- ② 다만,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경영승계 절차

제7조 (경영승계 절차 개시)

-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도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경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임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아, 제5조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경영승계 절차)

-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7조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

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제9조 (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 ①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하 '비상상황' 이라 한다) 발생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7조 제2항, 제8조에 준해서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3. 윤리강령

윤리강령

삼성증권인은 인간미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전문가적인 자질을 함양하여 회사를 세계적인 종합투자 은행으로 발전 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나.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회사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법규와 사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한다.

하나. 우리는 회사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라 믿으며 임직원간에 서로 존경하고 상호 신뢰구축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부단히 자기계발에 노력하여 금융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삼성증권

